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5. 10 선고 2023가단28026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경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26.

판 결 선 고 2024. 5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4. 28.부터 2023. 9. 25.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는 2022. 4. 7. C에게 4,000,000원을 변제기 2022. 4. 27.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, C는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22. 4. 28.부터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3. 9. 25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C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, 원고가 C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거나 변제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배운실